

대학교육혁신단 규정

제정 2017. 5. 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학교육혁신단(이하 “교육혁신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주요업무) 교육혁신단은 창의융합인재의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1. 교수-학습법 연구 및 개발
2. 교수-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진단
4. 이러닝과 MOOC 개발 및 운영
5. 빅데이터 기반 교육성과 평가 및 관리
6. 교수-학습과정 및 학생핵심역량 분석
7. 교육 과정 평가 및 인증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
8. 산학 및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
9. 산학 및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
10. 기타 교육혁신업무와 관련된 사업

제3조 (조직 및 구성)

- ① 교육혁신단의 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여 교육혁신단 하부 조직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교육혁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이 되며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육혁신단 소속 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교육혁신단은 다음과 같이 하부 조직을 구성하여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.
 1. 교수학습개발센터: 제2조 제1,2,3,4호
 2. 교육성과관리센터: 제2조 제5,6,7호
 3. 산학교육지원센터: 제2조 제8,9호
- ⑤ 교육혁신단은 연구 및 행정 인력으로 구성한다.
- ⑥ 교육혁신단은 연구업무를 위하여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의 전문연구원과 보조 인력을 둔다.
- ⑦ 교육혁신단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인력과 보조 인력을 둔다.
- ⑧ 교육혁신단의 단장은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⑨ 교육혁신단의 단장은 평가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 (운영)

①교육혁신단은 대학의 학부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제2조에서 정한 주요업무를 수행한다.

②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 및 외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유관부서와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